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876
----------	-------

발의연월일 : 2025. 9. 10.

발의자 : 서영교 · 김준형 · 모경종

김승원 · 조계원 · 황명선

민병덕 · 복기왕 · 임미애

최혁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자녀 수가 많을수록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일정 소득요건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취학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 체육시설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초등학생의 예체능 교육 활동에 대한 비용은 학부모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자녀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생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를 세액공제 항목으로 신설하고,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을 폐지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호 및 제5호, 제59조의4제3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머목2) 및 같은 조 제5호아목4) 중 “월 20만원”을 각각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한다.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나이”를 “나이 및 소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장애인”로 한다.

마. 초등학생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능학원(음악, 미술 또는 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머목2) 및 같은 조 제5호아목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육비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버. ~ 처. (생 략)	버. ~ 처.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5. ----- -----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u>월 20만원</u> 이내의 금액	4) ----- ----- ----- ----- ----- ----- -----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자. (생 략)	자. (현행과 같음)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 ② (생 략)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 (<u>나이</u> 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	③ ----- ----- <u>나이 및 소득</u> ----- ----- -----

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중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와 배우자 ·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 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 · 중 ·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 라. (생 략)

1. -----

가. ~ 라. (현행과 같음)

<p><u><신 설></u></p> <p>2. (생 략)</p> <p>3. 기본공제대상자인 <u>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u>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특수교육비</p> <p>가. ~ 다. (생 략)</p> <p>④ ~ ⑪ (생 략)</p>	<p>마. 초등학생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능학원(음악, 미술 또는 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p> <p>2. (현행과 같음)</p> <p>3. ----- <u>장애인</u>----- ----- ----- ----- -----</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④ ~ ⑪ (현행과 같음)</p>
--	--